

# 기록관리와 전문성\*

- 실천으로만 보장받는 배타적 특권 -

## Records/Archives Management and Professionalism: Exclusive Privileges in Exchange of Professional Commitments

이 소 연(So-Yeon Lee)\*\*

### 목 차

- |                   |                   |
|-------------------|-------------------|
| 1. 왜 전문성을 말하는가?   | 2.4 그러나 다른 대안은 없다 |
| 1.1 전문성 관련 주요 개념  | 3. 기록 전문직         |
| 1.2 전문성 연구        | 3.1 기원과 발전        |
| 2. 전문직과 사회        | 3.2 실무와 기반 학문     |
| 2.1 전문직의 기원과 관할영역 | 3.3 전문성과 윤리       |
| 2.2 전문직과 배타적 특권   | 4. 이제 다시 시작이다     |
| 2.3 전문직에 대한 공격    |                   |

### <초 록>

지난 해 치러낸 '기록관리 현안'은 기록공동체가 기록전문성의 본질과 사회적 가치를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성찰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문직 연구의 주요 문헌을 검토하여, 기록관리 전문성을 바라보는 더 근본적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전문성에 관련된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전문직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인 배타적 특권과 실천 의무의 양면성을 검토하였다. 전문직 연구의 일반론을 기록전문직에 대비하여, 실무와 기반 학문의 관계, 윤리규정과 협회와의 관계 등 기록전문성의 주요 쟁점사안을 조명하였다.

주제어: 기록 전문성, 배타적 특권, 전문직 윤리, 전문직, 전문직화

### <ABSTRACT>

Records and archives community was forced to face the essence of and social values of its professionalism.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lies in providing a broader and fundamental perspective to shed lights on professionalism in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on professionalism and professions. It reviews key concepts from the professionalism literature and scrutinized professional commitments and exclusive privileges, which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Fundamental issues involved in records and archives profession are also taken into account, inclu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s well as between professional ethic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

Keywords: professionalism, records and archives profession, exclusive privileges, professional ethics, professionalization

\* 이 논문은 제2회 전국기록인대회('기록관리, 전문성을 말하다', 2010년 5월 7일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확장한 것임.

\*\*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oyeon@duksung.ac.kr)

■ 접수일: 2011년 5월 15일 ■ 최초심사일: 2011년 6월 1일 ■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22일

## 1. 왜 전문성을 말하는가?

우리 기록관리 역사에서 지난 2010년은 아마도 '기록관리 현안의 해'로 기억될 것이다. 물론 현대적 기록관리가 시작된 이래 지난 10여 년간 현안이 없는 때란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록공동체가 2010년의 현안을 그토록 크게 받아들였던 것은 그것이 10년간 가까스로 이룬 성과를 뿌리 채 흔들만한 위력을 가진 전방위적 공격의 양상을 띠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기록공동체가 그 공격에 대하여 전력을 다해 저항함으로써 이를 상당 부분을 막아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른 바 '행정규제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진행 된 기록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도에는 10가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중 문제가 된 것은 (1) 보존기간 1, 3년 한시기록에 대한 평가심의 회 생략; (2) 2004년 이전 시스템에서 생산된 구전자기록 폐기 허용; (3) 비공개 기록의 5년 주기 재분류절차 생략; 그리고 (4)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완화 등 4개 조항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중 세 가지는 철회되었고,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에 관하여서는 국가기록원이 기록공동체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2010년의 현안이 마무리 되었다.

네 가지 조항 중 어느 것 하나 우려스럽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완화'는 나머지 조항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할 만큼 그 파급효과가 큰 사안이었다. 평가, 공개 재분류, 전자기록관리 등의 업무가 줄어들다면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해야 할 일도 줄어들 배치 필요

성도 줄어들 것이었다. 또 평가나 공개재분류와 같이 지난한 작업이나, 전자기록관리와 같이 있는 해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찾아가는 임무까지 포함된 난이도 높은 업무를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훈련받은 인력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업무가 남아있다 해도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기록관리에 우호적이었던 참여정부 때에도 기록공동체가 배출한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새롭게 배치된 기록관리 전문요원들이 공문을 작성할 줄도 모른다는 비난이 간간히 들려오더니, 어느 새 기록관리가 대학원에서 배워야만 하는 업무인가 하는 기반 학문의 정당성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공격은 다시 기록관리를 행정규제로 간주하여 업무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는 시도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기록관리를 포함하여 공공 및 민간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학력차별 철폐'라는, 얼핏 보면 매우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로 포장한 공격으로 그 범위가 시간이 갈수록 확산되었다. 그러나 '학력차별 철폐'는 사실상 학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대학교육의 무력화와 함께 전공에 기반 하여 경력을 쌓아가는 현대 전문직 제도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한 Freidson(2007)은 이러한 논리가 시장과 무한경쟁을 기본철학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사상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sup>

이 논문의 목적은 조직사회학과 노동사회학

1) 그는 더 나아가 더욱 더 친기업적으로 변해 가는 자본주의 사회가, 가장 강력한 사회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는 의사와 법률가를 포함한 모든 전문직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 설명한다.

분야에서 수행된 전문직 연구의 주요 문헌을 검토하여, 기록관리 전문성을 바라보는 더 근본적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2010년의 현안이 기록관리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지 못해서 발생하였다고 보는 시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다. '기록관리 현안'을 '어느 날 하필이면 우리에게만 갑자기 닥친 일'로 이해하는 수동적인 대응의 자세에서 벗어나 더 큰 맥락에서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가 우리에게 맡긴, 우리가 사회를 대상으로 약속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사명, 즉 전문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문성을 확립하는 길이 기록관리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임을 입증하는 데 있지 않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치중하느라 기반확문인 기록학을 더 구체적인 실무요령의 집합이나 더 낮설고 난해해 보이는 용어로 채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무요령은 전문직의 인간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전문지식을 파편화할 것이다. 더 낮설고 난해한 용어로 경도되면, 기록관리의 전 사회적 확산을 스스로 저해하고 고립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왜 이 사회가 한 전문분야로서의 기록관리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데에서, 그리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집단적으로 내면화하는 데에서 시

작되어야 할 것이다.

### 1.1 전문성 관련 주요 개념

전문직(profession)은 '(종교적인) 서약을 하다'는 의미의 영어 단어 'profess'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여기에는 '선한 것에 종사하고자 하는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동기'와 함께 '이 동기를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이제환 2003, 61). 돈을 지불하는 사람에게만 봉사하는 고용인과는 달리 사회 공동의 가치에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전문직을 '세속의 성직자'(Freidson 182-183)라고도 부른다. 업무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갖는 독점(monopoly)적 측면과 업무 수행 방식에 있어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율성(autonomy)라는 특징을 갖는다(Rothman 1987; 이홍직 2007, 154에서 재인용). 독점적 지위는 교육 이수 등의 진입 장벽으로 그 분야에서의 실무에 대한 독점적 특권을 보호하는 데에서 오는데, 이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자 비난의 표적'(전병재 등 9)이 되기도 한다.

전문직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는 주제는 전문직화(professionalization)라고 불 수 있다.<sup>2)</sup> 직업(occupation)이 전문직이 되는 과정, 즉 전문직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 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전문직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전병재 등(31)은 (1) 체계화된 전문지식, (2) 공식 교육을 기반으로 전문직 구성원 충원, (3) 독점, 그리고 (4) 윤리 등을 들고 있다. 대체

2) 한편, 전문직으로 인정받던 직업이 사회 변화로 인해 그 인정을 잃는 경우를 탈전문직화(deprofessionalization)이라고 한다(이홍직 2007, 157).

로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공식교육을 이수하여야 진입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에 설치된 학과의 학문이 체계화된 전문지식의 내용을 구성한다. 전문직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전문직 연구를 양분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자들 사이에서 큰 시각 차를 보이는 개념이기도 하다. 예컨대 전문직화에 집중한 McDonald는 전문직 이론의 네 가지 틀을 제시하고 전문직 프로젝트라고 명명하였다. 즉, (1) 독점과 인가를 위한 국가와의 규제협상, (2) 관할영역의 독점적 확보를 위한 다른 전문직과의 경쟁과 투쟁, (3) 전적으로 이기적인 것만은 아닌 전문직화의 동기,<sup>3)</sup> 그리고 (4) 사회적 폐쇄를 통한 독점이 전문직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취하는 네 가지 핵심전략이라는 것이다(74-76).

불행히도 전문직화 과정에 대한 연구 중에는 탐구의 대상으로 전문직을 다루기보다는 특정 전문직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문헌이 드물지 않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문직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연구하는 대신, 전문직이 사회로부터 받는 보상에 초점을 두게 된다는 근본적 허점을 안고 있다. 이에 반발하여 전문직을 정의하거나 전문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부정하는 학자도 있다. 예를 들어 Barley와 Tolbert는 전문직이라는 용어에는 무엇이 전문직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짐덩이가 수반되어(7), 학술적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어떤 직업이 전문직인지 아닌지에 대한 학술적 논의에 다양한 전문직 기반학문 연구자들이 뛰

어들어 각자의 희망을 투사한 내용으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Freidson은 가능한 전문직 대신 직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31). Abbott도 전문직화는 잘 해 봐야 오해를 유발할 개념일 뿐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전문직화를 연구의 초점으로 삼으면, 전문직 업무와 생활의 내용이 아니라 외관과 형식만을 다루게 된다는 것이다. 즉,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무시하고, 협회나 자격증, 또는 윤리강령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다(1).

Abbott은 전문직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불필요하며 오히려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한다. 전문직이 현대 사회에서 갖는 바로 그 힘과 중요성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직이라는 용어는 조직의 형태, 사회적 경의의 정도, 지식과의 연관성, 개인의 경력 개발 방식 등 여러 가치를 동시에 의미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함축된 의미로부터 그 중요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 그 용어에 대하여 모두가 동의하는 정의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누군가는 전문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회로부터 받는 보상을 의미하고, 누군가는 높은 교육수준이나 경력개발유형을 떠올리는 상황에서는 의미 있는 토론이 나오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전문직처럼 문화적으로 다양한 의미가 층만한 용어,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은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시키려면, 엄밀하고 정확한 정의를 찾으려 애쓰기 보다는 느슨한 정의를 기반으로 그 본질

3) McDonald는 자신들이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서비스들을 전문직이 실제로 행한다는 점에서 전문직이 이기적인 동기, 즉 밥그릇 싸움만을 목적으로 하여 전문직화를 시도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을 탐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Abbott의 주장이다(318). 그가 제시하는 느슨한 정의는, '특정한 문제(particular cases)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추상적인 지식(abstract knowledge)을 적용하는, 배타적 직업군'이며, 이 연구에서도 이 정의를 채택하고자 한다(8).<sup>4)</sup> 여기서 특정한 문제란 전문직 업무의 대상을 의미한다. 추상적 지식은 상당한 훈련을 요하는 수준의 지식으로, 이 지식을 문제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전문적 판단에 따라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성격을 갖는다. 한편, 배타적 직업군이라는 속성은 진입을 위한 자격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독점적이고 자율적인 통제의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사실 가장 혼란스러운 용어는 프로페셔널리즘이다. 이 영어 단어는 전문직업성(전병제 등)이나 전문직업주의(권오훈)로 번역되기도 하고, 프로페셔널리즘으로 그대로 음차(박호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전문직업성이라는 대역어에는 어떤 직업을 전문직으로 만드는 속성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 이 대역어를 선택한 전병제 등은 전문직의 속성을 총괄하는 의미, 즉 '하나의 직업이 사회성원들로부터 전문직으로 인정받도록 만드는 특수한 직업 속성(58)'으로 정의한다. 구혜란(2003)은 전문직업성이라는 대역어로는 프로페셔널리즘의 역동성이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여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포괄하기 어려우므로 전문직주의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전문직주의라는 대역어 선택에서는 전문직의 정신적 측면에 주목하고자 하는 의도가

암시되어 있다. 한편 Freidson은 프로페셔널리즘을 '소비자나 경영자가 아니라 직업의 구성원이 노동을 통제하는 제도적 환경(30)'으로 정의한다. Abbott도 이 용어를 전문직 제도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개념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프로페셔널리즘 그대로 음차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일상적 용어로서의 영어 단어 프로페셔널리즘의 사전적 의미는 'the behaviour, skill, or qualities shown by a professional', 즉 '전문가가 보이는 행동, 기술과 특성'이다(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1987). 이 사전적 의미를 우리 말로 전달하는 우리 말 대역어는 전문성으로, 전문직 관련 우리 문헌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용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하는 용어는 오히려 'professional expertise'이다. 국내 연구들은 전문직과 전문직업주의를 전문성(expertise)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강인호, 백형배 2007, 277).

여기서는 전문성(professional expertise 또는 expertise)을 '특성 분야에 대한 연구와 실천으로 깊이 있는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상태로, 인성, 지식, 기술로 구성되는 역량으로 정의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전문직 관련 논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은 전문성일 것이다. 전문성을 향상하는 과정이 전문직화(professionalization)이고, 전문성을 가진 직업이 전문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문성은 성취하였거나 성취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가부 판단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사회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전문직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

4) 이 정의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장을 보라.

지향이자, 매 순간 현재를 성찰하는 잣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 1.2 전문성 연구

기록학에서 전문직의 문제를 다룬 문헌은 매우 빈약하다. 전문직 형성과정과 윤리를 다룬 송정숙(2010), 기록전문직의 유형과 역할을 살펴본 김희정(2007), 이상민이 번역한 ICA 아키비스트 윤리규약(1999), 아키비스트의 윤리규약을 살펴본 오항녕(2003)과 신은영(2006)이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학에서 전문직 전반을 다룬 연구로는 전병재 등(2003)과 두 권의 번역서(Freidson 2007; McDonald 1999), 그리고 구혜선(2003)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McDonald의 저서를 번역한 권오훈은 역사 서문에서 우리 나라에서 전문직 연구가 빈약한 이유가 군사정권으로 대변되는 한국 현대사의 사회학적 주요 화두가 군부 개발독재와 파행적 사회 불평등 문제의 극복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직 구성원을 사회적 동학의 주체로 보기에는 그들의 역량이나 사회적 활동 범위가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5).

특정 전문직의 전문성 문제를 다룬 연구로는 유아교사(김현자 2008), 간호사(이숙경 2010), 사회복지직(이은주 2003; 이홍직 2007), 법조인(이경원, 김정화 2010; 이경원, 김정화 2002), PR전문가(박은영, 조삼섭 2007), 지방공무원

(강인호, 백형배 2007), 언론인(이정훈, 김균 2006; 정태철 2005), 그리고 사서직(김기영 2008; 김용근 2002; 이선우, 김기영 2009; 이제환 2003)을 다룬 연구 등이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해당 직종의 전문성에 대한 내외부의 인식(김현자 2008; 김용근 2002)이나, 전문성 향상 방안(박은영, 조삼섭 2007; 이숙경 2010; 이홍직 2007) 등 전문직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sup>5)</sup> 전문직화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연구자들은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인식과 인정에 집중하거나, 전문직화 요건에 주목하는 경향을 갖는다.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전문직화 요건으로는 추상적 지식체계, 상당기간에 걸친 훈련 및 교육과정, 사회에 대한 봉사지향성, 윤리강령, 전문직 협회 등이 있다(전병재 등 33-38).

그러나 전문직의 업무 자체를 배제하고, 형식과 구조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접근방식으로는 사회 속에서의 전문직이라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문직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여러 전문직의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전문직이라는 사회적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전문직화에 성공한 야심적인 직업군이 전문직이라는 기존 연구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사람은 Abbott으로, 그는 업무의 내용과 그 범위를 지칭하는 관할영역(jurisdiction)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전문직 이론을 발전시켰다.

5) 언론인과 법조인의 전문성을 다룬 연구들은 그 기능의 공공성의 후퇴 현상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전문직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립 필요성을 강조한다. 사서직을 다룬 이제환이나 사회복지직을 다룬 이은주의 연구는 전문직이 사회로부터 받는 인정과 보상이 아니라, 실천과 책무를 강조하였다.

## 2. 전문직과 사회

### 2.1 전문직의 기원과 관할영역

전문직의 기원은 자급자족을 기반으로 한 농촌사회와는 달리 돈으로 전문 서비스를 사는 시장이 형성되면서 전문인력의 수요가 급증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농촌에서는 마을의 어른이 판사나 의사, 교사를 대신했으며, 이들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현금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도시와 경제문화가 발달하면서, 혈통과 관계없이 재산을 축적한 중류 계급이 부상하였고, 이들의 자제를 위한 교육이 보급되었다. 평판이 좋은 교수의 주변으로 모인 학생들이 일종의 조합(guild)을 구성하고, 점차 교수들이 교수단(faculty)로 단합하기 시작한 것이 초기 대학의 모습이었다. 점차 왕이나 교황으로부터 대학헌장(charter)을 부여 받은 교수단이 정규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12세기 초에 이르러 이태리 살레르노 의과대학, 볼로냐 대학, 파리 대학 등이 등장하여 전문직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이들 대학에서 의학, 신학, 철학, 법률, 수학을 배운 사람들이 의사, 법률가, 고위급 사제나 공무원으로 양성되었다(김세익 1980, 119-124). 사실상 대학은 순수학문의 탐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태동한 것이다.

전문직은 전문 서비스의 사회적 수요가 발생할 때 출현한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전문직은 새로운 관할영역(jurisdiction)의 발생과 함께 출현한다. Abbott에 따르면 사회 문화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식된 새로운 관할영역이 만들어지거나, 기존 관할영역의 주인이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장악력을 잃는 경우에 새로운 전문직이 탄생한다(3). 전문직 업무의 대상이자 업무 내용을 결정하는 관할영역의 예로는 기술 자체(컴퓨터 프로그래머나 기차 기관사와 정비사), 조직(사회복지시설의 복지사, 상담사나 학교 교사), 실물 객체나 사실(인간의 신체와 의료전문직, 환경과 관련 전문직), 사회제도(사유재산과 회계사, 법률과 법률가) 등을 들 수 있다(39). 기업이나 공공기관, 군의 경영은 특정한 콘텐츠가 없어, 이 중 어떤 집단도 경영을 전문직화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103). 이러한 관할영역은 사회 변화에 따라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데, 철도전문직의 종말이 가장 단적인 예가 된다.

기술이나 사물이 아닌 사회문화적 가치가 관할영역을 만들거나 없애기도 한다. 행복, 건강, 자아실현 같은 개인적 가치를 갖고 업무를 정당화하는 전문직도 있고, 사회적응, 정의, 질서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전문직도 있고, 민주주의, 기획, 정보공개와 같은 정치적 가치를 지향하는 전문직도 있다(187). 사회 운동으로 불거진 사회 문제가 잠재적인 전문직무가 되기도 한다. 이런 운동의 지도자가 새로운 전문직으로 변모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공공도서관 운동과 공공교육이 그 예이다. 하지만 사회 운동이 어떤 문제를 탈전문직화(deprofessionalization), 즉 전문직이 필요 없어진 문제로 바꾸기도 한다. 의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로 부터 알콜중독이라는 관할영역을 뺏어간 금주운동(temperance movement)이 훌륭한 예가 된다(149-150).

통념적으로 생각하듯이 인간사회에 전문직이 등장한 이유는 '아무나 하기 어려운 직무'이

기 때문만은 아니다. 어떤 문제를 전담해 줄 일군의 직업인, 그 문제의 해결에 전업으로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인, 보수나 인정을 따라 다른 일로 옮겨가기 보다는 그 일의 해결에 평생의 경력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직업인을 사회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전문직이 등장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아무나 하기 어려운 일에 관련된 지식'을 축적하는 데에도 전문직이 다른 집단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진입장벽을 통해 내외부가 명확히 구분되는 폐쇄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서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유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평생을 전업으로 그 일에 종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집단이므로 해당 문제를 다루기 위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축적하기에도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 전문직이 해당 관할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더 유능한 전문직이 출현하여 기존 전문직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직의 탄생의 우선적 조건은 업무의 난이도가 아니라 전업인력의 사회적 필요였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어떤 직업이 전문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업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얼마나 난해한가가 아니라, 그 전문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회가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그 전문직이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킬 실천의 의지가 있는가에 두어야 할 것이다.

## 2.2 전문직과 배타적 특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서는 Abbott의 느

슨한 정의를 수용하여, 전문직을 '(1) 특정한 문제(particular cases)를 대상으로, (2) 어느 정도 추상적인 지식(abstract knowledge)을 적용하는 (3) 배타적 직업군'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특정한 문제란 전문직 업무의 대상을 의미하며, 이를 관할영역(jurisdiction)이라고 부른다. 관할 영역은 어떤 문제의 해결을 우선적 목적으로 삼는 전업 직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수요가 발생할 때 형성된다. 또 그 직종이 이 관할 영역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질적, 양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를 다루는 다른 직종이 등장하여 경쟁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한 문제, 또는 관할영역이야말로 어떤 전문직이든 그 정체성과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전문직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인 추상적 지식은 전문직의 기반 학문을 구성하는 지식의 총합을 의미한다. '추상'과 '지식'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지식'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말한다. 만약 이 지식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전업 직종도, 관할영역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각자 알아서 해결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당한 훈련과정을 거쳐야만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일 때 전문직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전업 직종을 적어도 고등교육기관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회가 인식할 때 그 기반학문이 발생한다.

그런데 특정 문제에 특정 지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면 역시 전업 직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지식을 표준화한 실무

편람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한 문제의 여러 변형이 존재하여 매번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거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적용할 지식의 세부사항이 달라지는 경우라면만 전문 직종이 필요해진다. 실무 지식이 아니라 '추상'적 지식이라고 정의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전문적 판단의 여지를 줄이고, 지식을 과도하게 파편화하고 표준화하여 인간이 아닌 다른 도구에 담는 방식은 전문직 스스로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현명하지 않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배타적 직업군이라는 속성은, 진입을 위한 자격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전문직 공동체가 집합적으로 독점적이고 자율적인 통제의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전문직으로 간주되는 직종이 다른 직종과 다른 점은 신규인력의 진입을 통제하는 기제를 갖고 있다는 데 있으며, 이를 진입 장벽, 또는 배타적 특권이라고 한다. 진입 장벽은 (1) 고등교육기관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이나, (2) 표준화된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한다.<sup>6)</sup> 사서나 교사는 (1)의 전형적 사례로서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양성과정, 즉 대학의 교과과정을 인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전공과 무관하게 시험을 통과하면 누구나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 분야가 (2)의 대표적 사례이다. 한편 의사는 고등교육과정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므로 (1)과 (2)를 모두 적용한 사례라고 하겠다. 진입장벽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고용과 실무의 기회와 함께 그에 따르는 보상과 인정이라는

배타적 특권을 누리게 되는 직종이 전문직이다. 그리고 배타적 특권을 부여 받은 이상, 전문직이 그 배타적특권을 누리 마땅할 만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전문직 내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점검당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 2.3 전문직에 대한 공격

사실상 전문직의 독점적이고 배타적 속성은 전문직이 '사회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사회적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하는 이율배반적인 성격'(전병재 등 9)을 갖게 한다. 이 속성 때문에 Freidson은 전문직을 폐쇄적 공동체(290)라고 부르며, McDonald는 전문직이 배제와 사회적 폐쇄에 의존하여 사회적 위상을 확보한다고 설명한다(11). 전문직이 사회적으로 발생한 순간부터 수명을 다하는 마지막 날까지 배타적 특권이 정당함에 대한 공격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배타적 특권이야말로 모든 전문직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공고한 사회적 인정을 받고 있다고 간주되는 법률 분야나 의료 분야조차도 그 특권을 정당화할 만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물론 이 두 직종이 가장 대표적인 전문직의 전범으로 간주되는 덕분에, 그 만한 보상이나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다른 전문직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의사나 법률 전문직도 집단적으로는 아니라 하

6) 뚜렷한 진입 장벽이 없이 조직체에서의 경험 유무에 따라 소속이 결정되는 언론인이나 경영인 등을 광범위한 전문직에 포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체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더라도 개인적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sup>7)</sup> 구혜란(2003)은 1990년 이후 그 동안 전문직업단체에게 부여되던 자율적 권한이 크게 축소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국가의 간섭과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관찰하였다. 특히 전형적인 전문직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던 변호사나 의사집단에게 규제가 더 민감한 문제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1998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 간에 전문직단체의 자율징계권과 회원등록업무 등을 국가기관으로 환수하는 문제로 빚어진 갈등이나, 의약분업을 비롯하여 의료서비스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조치로 빚어진 갈등이 그 예가 된다(232).

이경원과 김정화(2010)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직으로서의 법조인의 특성과 독립성, 자율성의 정도와 한계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에 사법제도가 이식됨으로써 공공성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존경과 함께 특권을 인정 받아가는 전통이 없었던 것이 법조 전문직이 가진 태생적 한계라고 지적하였다. 그 결과 취약한 자기규제와 과도한 특권의식으로 오늘의 전문성 위기를 낳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직업윤리의 측

면에서 변호사는 1962년에 변호사 윤리장전을 제정하였고, 판사는 2000년에 이르러서야 직업 윤리 성문화 시도가 있었으나,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계층구조에서 상명하복 관계에 따른 통일체로 활동한다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가진 검사의 경우 직업윤리에 대한 논의조차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일한 저자들의 또 다른 연구(2002)는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기반으로 직업 자부심은 높지만 자율성 인식은 낮고, 스스로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전문직이 자율적인 규제에 실패하면 외부로부터의 개입이 가능해진다는 Rosenthal(1988; 이경원, 김정화 2002, 186에서 재인용)의 주장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문직이 누리는 특권이 합당하다는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의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첫째,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다. 둘째, 누가 감독하지 않아도 양심적으로 맡은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적 이익보다 고객과 사회적인 이익을 우선에 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의 일탈 행위를 판단하고 규제할 기제와 의지를 갖고 있다.

7)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공문 작성이나 주사 놓기와 같이 반복적 경험의 축적으로 습득하는 기술이 신입 전문직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숙련된 간호원보다 주사를 잘 놓지 못하는 신참 의사나, 비서보다 소송문건을 잘 작성하지 못하는 변호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공문서 처리에 미숙한 기록전문가도 여기 해당될 것이다. 신입 직원의 미숙함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 교육의 효능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같은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관련 직종 종사자들은 단지 몇 년 더 학교를 다녔다고 보장받는 배타적 특권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은 신규 인력의 선발과 양성의 과정을 더 엄격하게 하거나, 교육 내용에서 현장 실습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의사 업무의 본령이 주사 놓기에 있는 것이 아니듯, 기록전문가 업무의 목적이 공문 작성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전문직 업무는 숙련으로 완성되는 기술이 아니라 그 조직 내에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기획과 문제 해결일 것이다. 다만 인력활용을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직종 간 업무를 분화한 조직 환경, 즉 병원이나 로펌에서는 상위 직급에 있는 의사나 변호사가 관리 책임까지 맡게 되는데, 감독 대상인 하위 직급의 인력이 담당할 업무의 기술은 지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직이 자율규제에 실패하지 않았는데도 전문성이 공격 받을 수 있다. Freidson은 자본이나 자본에 동조하는 정치적 권력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전문직이 영향을 주고자 할 때, 전문직의 이데올로기를 믿을 수 없다는 비난이 더 거세게 불거져 나오는 현상을 지적한다. 이들은 전문화한 지식과 기술이 일상적 지식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것도, 더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함으로써 물질적 이익을 초월하는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한다. 주로 독점의 정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문직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에서 전문직의 영향력을 약화시킨 주요한 원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독자적으로 도덕적 의견을 내놓아 사회정책을 비판하는 전문직의 권위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전문지식의 용도를 통제하는 자본과 정부의 힘을 강화시켰다. 그 결과로 소비자주의와 경영자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힘과 정당성을 부여하여 자본과 국가의 압력에 대처하는 전문직의 역량을 약화시켰다(Freidson 283-284, 299-300). 그리고 개인개업 비율이 높았던 의사나 변호사조차 점차 기업화된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속화될 것이다.

전문직이 국가 행위에 의한 탈전문화에 취약하다는 점은 역사를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나치와 소련에서 벌어진 전문직 무력화가 그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전문직이 완전히 분쇄되지는 않았으며 이후 다시 재건되었다(Freidson 190-192). 프로페셔널리즘은 사회가 믿고 맡긴 가치를 실천하는 사명을 갖고 있으며, 아직 현대사회는 프로페셔널리즘

을 대체할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안이 없다는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므로 이 공격이 성공하게 되더라도, 아마도 그리 오래지 않아 다시 되돌이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다른 전문직보다 기록전문직이 정부의 성향에 따라 부침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려할 지점이다. Abbott(64)은 사법체계가 강한 영향력을 갖는 국가에서는 전문직의 법적 특권이 지속되는 편이지만, 프랑스처럼 행정직군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법적인 변화가 갑작스럽고, 광범위(extensive)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런 관찰은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아직 뿌리 깊이 자리 잡지 못한 기록전문직이 앞으로도 부침을 반복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 2.4 그러나 다른 대안은 없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문직 제도에 대한 공격의 주요 표적은 프로페셔널리즘의 핵심적 기제인 독점적 특권과 배타성이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 독점은 전문직 제도가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기본 조건이기도 하다. 첫째, 전문직은 독점이라는 장벽 안에서 전문 지식을 육성한다. 관찰영역과 공동체의 경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지식과 기술의 본체를 집중적으로 발전, 확장, 연마,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직은 교육과정에서 일반화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얻은 경험을 공동체 내부에서 소통하며, 공동체 내부에서 걸러진 지식이 다시 기 반학문을 정련하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전승한다. 이러한 지식의 환류 과정

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폐쇄된 공동체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Freidson은 전문직의 배타성보다는 같은 동전의 뒷면이라고 할 수 있는 포섭성(inclusiveness)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것이 바로 산업사회의 생산성을 보장해 온 분업의 본질이라는 것이다(290-291).

전문직에 배타적 독점이 꼭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서비스 품질을 자율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있다. 전문직에게 자율적 통제를 허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고 전문직의 잘못된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직은 동료집단이 부여하는 상징적 보상에 의존하는 경향 때문에 내적 규제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행동을 규제할 수 있다(Parsons 1939, 185-199; 구혜란 2003, 235에서 재인용). 진입장벽은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문직이 제공하는 집합적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제로도 기능한다는 것이다. 전문직의 자율성을 맹목적으로 보호할 이유도 없지만, 이기적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만 백안시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만 자본주의가 극대화된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전문직이 보상에만 주목할 뿐, 그 보상과 맞바꾼 실천의 의지와 성과를 입증하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의 사회적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언론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인,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연구원, 정권의 이익에 맞추어 감사결과를 감추거나 왜곡하는 감사들, 어용학자와 같은 전문가를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전문직 공동체에서 이런 이들을 자율적으로 통제하였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 본 적이 없다. 전문가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음

과 같은 심정일 것이다(하승수 2011).

(수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정말 공공의 입장 또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개인적 이해관계나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분야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 (중략)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전문가가 아쉽다 ... (중략) 이해관계에 얽힌 전문가는 타락하기 쉽고 위험하다. 그런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과 영향력으로 다른 목소리를 억압하려고 할 때에는 더욱 위험성이 커진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경계하고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문제는 전문직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제도가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전통이 없었던 우리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문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 내부의 자율적 통제를 강화할 방안을 찾는 일일 것이다. 한편으로 전문직은 사회로부터 수입 받은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판단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로서는 자본과 국가가 권력과 영향력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할 다른 장치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Abbott은 전문직 제도가 산업화된 국가에서 전문지식을 제도화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기능해 왔다고 지적한다.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특정 분야의 지식을 전문직이라는 직업군에 봉인하여 전승하여 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가 특정 문제에 특화된 평생의 전문가(experts)<sup>8)</sup>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전문

기술을 어떤 사물이나 규칙에 담아 두기보다, 인간 집단에 담아 두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계는 복잡한 결정을 내릴 수 없고, 규칙만으로는 모든 사례를 미리 예상하여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특정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집단을 양성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323).

배타적 특권에 대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전문직 제도가 지속되는 데에는 그 밖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시장주의 사회에서의 직업 구조가 지식이든 재산이든 개인이 보유한 자원에 따른 고용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전문직은 특정한 직업에 평생의 경력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은 더 안정적이며, 더 자율적이고, 대부분의 경우 더 보상이 후하다. 두 번째로, 거의 모든 유형의 지식이 집단이 공유하는 자원으로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 구성원 중 그 누구에게도 자기 삶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모두 갖고 있거나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문화된 지식으로서의 가능성을 갖는 인류의 문제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알콜중독, 자살, 노화, 건축, 삶의 궁극적 의미, 재무 자문, 성욕 감퇴, 폭력,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대상으로 전문직군이 형성되었다. 세 번째로, 프로페셔널리즘보다 나은 산업사회의 경쟁형식이 아직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전문기술의 상품화<sup>8)</sup> 등 전문지식을 구축하는 다른

형식이 프로페셔널리즘과 경쟁할 만한 영향력을 갖추기는 어렵다(Abbott 324).

그러므로 전문직 제도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공허하다. 전문직을 대체할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 시장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교육을 기준으로 하는 자격인증 제도(credentialism)가 시장에 대한 강요이고 고용의 자유를 구속한다며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격인증 제도를 반대한다는 경향을 보인다(Freidson 294). 적절한 정보를 가진 소비자는 스스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이도 노동시장의 자율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보통의 소비자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시간이 없거나, 상업광고정보의 홍수 속에서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기 어렵거나, 그 정보를 상황에 맞게 추론하여 문제 해결에 적용할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는 장애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고 서라도 특정 영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선택하는 다른 대안들에 비해서 보면 자격인증에 기반한 전문직 제도가 가장 나은 대안이다. 개선해야 할 것은 진입 제한 그 자체가 아니라, 전문직이 행사하는 배타적 특권의 한계를 정하고, 남용을 막는 일일 것이다.

한편 Freidson은 또 전문직이 독점을 통해 얻

8) 우리 말에서 professional과 expert는 모두 전문가로 번역된다. 그러나 두 단어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명백히 구분되는 대상을 지칭한다. professional이 특정한 전문직 공동체, 즉 특정한 profession에 속한 전문가 개인을 지칭하는 반면, expert는 소속 직군의 존재와 무관하게 어떤 문제를 다루는 데 능숙한 사람, 즉 초심자(novice)가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9) 전문기술의 상품화의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례는 초기에는 소수의 컴퓨터 전문가들만이 구사할 수 있었던 전문기술이 웹 저작도구나 사무자동화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의 상품 안에 내재되어 판매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는 특권에는 경제적 특권이나 지식에 대한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천의 배타적 특권, 또는 의무도 포함된다고 지적한다(288-289). 기록학이나 문헌정보학 등의 응용학문은 이론과 실무를 그 양축으로 구성되는데, 이 때 실무(practice)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론과 대비되는 의미의 실무, 즉 특정 조직에 속한 특정한 개인이 주어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 뿐 아니라, 한 전문직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를 실천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에는 공동체가 사회로부터 부여 받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실무환경을 만드는 더 큰 의미의 실천도 포함되어 있다.

전문직 제도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그 공격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사사로운 이익과 부당한 권력을 감추기 위한 가면으로만 사용되어 온 것은 아니다. 전문지식은 체계적 사고,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에 기반 하는 것이다. 개별 사례의 경험을 다른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일반화, 추상화 한 내용이 전문지식이며, 전문지식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공유와 동화를 위한 보호막으로 기능하는 것이 배타적 공동체이다.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의 훈련과정을 거쳐 집단적으로 발전시킨 전문지식을 체화한 인력이 실천을 통해 전문지식을 다시 사회에 환원시킨다. 이러한 훈련과정이야말로 전문직 제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진입장벽이자 배타성이지만, 진입장벽이라는 보호막이 없이는 전문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 3. 기록 전문직

#### 3.1 기원과 발전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은 국가마다 다르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방대한 연방 관료체계가 생산한 엄청난 양의 기록을 관리할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단기 훈련과정과 함께 대학원에서의 양성이 시작되었다(정연경 75).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정책 결정 과정을 밝혀 줄 수 있는 기록의 부재에 대한 전사회적 문제의식이 확산된 것을 계기로 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기록관리 제도가 태동했다. 즉, 이익집단의 배타적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그 사회적 필요에 대한 인식이 발생하면서 제도가 요청된 것이다. 그리고 그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력 양성제도와 함께 그 인력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의 원천으로서의 학문이 시작되었다.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보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감시라는 목적에 중점을 두어 태동한 우리 기록전문직과 관련 제도가 공공기관의 기록 문제에 초점을 두어 발전한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기록 생산 의무 준수와 함께 의도적이거나 우발적인 폐기의 방지, 기록 공개 활성화 등에 방점을 둔 법제의 정련에 공동체의 거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마침 기록관리를 통한 행정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던 참여정부와 이제 막 활성화된 기록공동체가 만나, 놀랍도록 빠른 시간 동안에 큰 성과를 보일 수 있었

다. 이러한 특수성은, 전문직이 법적 위치를 확보하는 데에는 공공의 인정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Abbott의 관찰과는 다른 것이다.

Abbott은 통상적으로 관할영역의 법적 수립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수립되고 나면 오래 지속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미국 의학은 초기부터 법적 관할권 확보를 시도했지만, 이들이 실제로 법적 지위를 확보했을 때는 이미 공공의 인정을 획득한지 오래인 때였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2010년에 기록공동체에 닥쳤던 위기는 기록전문직과 기록관리에 대한 공적 이미지의 확립 과정에 앞서 법적 지위부터 확보했던 우리 기록공동체가 언젠가는 겪을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다시 Abbott을 인용하자면, 전문직 관할영역의 합법성이 외부의 힘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성이 외부의 힘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64).

사실상 지난 10년 간 우리 기록공동체의 가장 큰 화두는 어떻게 기록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법제화, 제도화할 것인가, 그리고 정해진 시한 안에 법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실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력을 양성하여 배출할 것인가에 있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기록에 대한 집중은 한편으로는 민간기록과 문화유산에 대한 상대적 소홀로 연결되어 어떤 의미에서는 기록관리의 저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기록관리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 기록관리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부로부터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의 하나가 된 것도 사실이었다.

한편, 상이한 두 공동체, 즉 기록전문직(records managers)과 보존기록전문직(archivists) 공동체가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분리되어 형성된 다른 나라들과 달리, 단일한 교육과정을 통해 두 직군을 모두 배출하는 방식이 우리 기록전문직 제도가 갖는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두 직군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기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통해 그동안 지식과 경험의 공백을 제한된 시간 안에 급속히 채워 넣는 일이 시급했던 우리 기록공동체가 이러한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음을 절감하게 했다. 생산기관에 배치된 기록관리자와 국가기록원의 실무자들 간에 유기적 협력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두 직군이 공유하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안에 대한 소통조차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록공동체 내부의 파편화는 외부의 공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심각하게 위축시킨 원인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

2010년의 '기록관리 현안'이라는 맥락에서 기록전문직에 대한 공격의 주역은 정부였다. 현행법에 따라 공공 기관에 기록전문직을 배치할 의무를 갖고 있는 정부가, 바로 그 책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의 책무를 무화시키는 법 개정을 시도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쟁점이 변모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기록관리 석사과정이 공문작성에 능숙한 공무원을 양성하는 데 얼마나 성공적인지에 대한 국지적 문제 제기에서 시작하여, 기록관리가 석사학위가 필요할 정도로 전문적인 업무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로 발전하였다.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서는 기록관리의 전문성에 대한 공격은 공공기관에서 전문직군 전반의 존재 의미에 대한 문제 제기로, 그리고 전문직 제도와 대학교육에 대한 공격으로 갈수록 그 공격의 범위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기록 공동체도 초기에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는 대신 행정직을 그 자리에 채우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즉 관할영역에 대한 통제권을 목표로 하는 공격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소위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개혁안이라는 미명 아래 기록관리 개혁안을 발표함으로써, 공격의 목표가 기록에 대한 관할권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여기에는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자격완화 뿐 아니라 폐기절차와 공개심의절차 간소화, 그리고 전자문서의 생산기관 폐기 등의 기록관리 무력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공격의 의도가 기록을 생산하지도 관리하지도 공개하지도 않던 10년 전으로 돌이키는 데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기록관리 업무를 문서수발 업무로 회귀시킴으로써 기록관리의 10년 역사를 무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업무를 없애 전문직의 존재 의미를 약화시키고, 전문직 훈련을 받지 않은 인력의 진입을 확대함으로써 기록관리 업무를 없애는 데 대한 저항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기록전문직을 공격하는 주체들은 기록공동체가 기록관리에 대한 관할권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이른바 '밧그릇 싸움'으로 매도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훼손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는 기록전문직의 관할권 주장이 경제적인 권리 행사인 것으로 왜곡하고자 하는 시도였던 것이다.

그들은 사실상 기록공동체로부터 빼앗아 간 관할영역의 책무를 대신 수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록관리 업무를 축소하거나 무화시킴으로써 귀찮은 업무를 피하고, 기록전문직이 비운 자리를 행정인력으로 채우고자 했던 것이다. '행정규제 완화'라는 표면적으로는 정당해 보이는 구호 아래 숨은 진실은 '기록을 남기지 않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욕망이었다.

더 시간이 지난 후 총리실로 주도권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공격의 범위가 확산되었다. 기록전문직 등 전공자들 사이의 제한경쟁으로 공무원 임용하는 제도뿐 아니라 공무원 임용에서의 학력기준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공격의 한국판 시나리오가 바야흐로 전개될 예정이었던 것이다.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정부가 기록전문직을 대표적 사례로 하여 전문직 제도 전반을 공격함과 동시에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교육의 근간마저 흔들 참이었다. 그리고 이 공격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 '학력에 따른 차별철폐'라는 구호로 포장되어 있어 더 위험한 상황이었다.

결국 2010년의 시도는 자격시험의 부분적 시행이라는 결말로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기록공동체는 자격시험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실무에서 필요한 지식을 파악한 내용을 기반으로 전문지식을 내실화하고, 이를 교육과정 안에 표준화하여 담아내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2010년의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했어야 할 일이며, 기록전문직이 이 땅에 존재하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는 기록관리 업무의 본령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 그리고 업무 수행능력과 기반지식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3.2 실무와 기반 학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가 전문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발생할 때 전문직이 출현한다. 새롭게 출현한 관할영역의 문제들을 해결할 기반 지식은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수밖에 없다. 체계화된 전문지식이 존재한다면 새로운 관할영역이 형성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련된 인접 영역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전문가 집단의 1세대, 또는 0.5세대를 형성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우리나라에서 기록관리라는 관할영역은 기록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감시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생성되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지원하려면 기록을 생산하게 해야 했고, 생산된 기록이 우발적으로나 의도적으로 멸실,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했고, 최대한 공개되고 활용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기록을 이용하여 연구하던 역사학자와 기록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간행물<sup>10)</sup>의 관리를 담당하던 문헌정보학자가 협력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다. 공공기관이 움직이는 방식을 이해하는 행정학자들과 기록이 생산,

관리되는 컴퓨터 환경을 이해하는 전산학자들도 합류하였다. 다른 분야에서의 활동 이력을 갖고 기록관리 분야에 합류한 이들 기록관리 0.5세대는 근대 기록관리의 전통이 우리보다 앞선 해외의 사례를 연구하고, 자신의 배경학문으로부터의 지식을 더해 우리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모색하였다. 기록관리 전통이 앞선 나라들이 종이 환경과는 전혀 다른 전산 환경에 맞게 기존의 방법론을 재구성해야 할 입장에 있었고, 전산 환경의 도입의 정도가 우리가 더 빨랐기 때문에 기록의 생산, 관리, 활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기반 지식의 축적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사실상 아직도 기록관리학의 기반 지식은 체계화된 부분보다 채워야 할 부분이 더 큰 상황이다.

Abbott에 따르면 전문직 업무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해결해야 할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범주화하는 진단(diagnosis), 문제의 속성을 분석하여 해결하는 데 적용해 볼 수 있는 선택을 확인하는 추론(inference), 그리고 최선의 선택으로 판단된 선택을 적용하는 실행(treatment)이 그것이다. 세 과정의 흐름은 일직선 상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진단보다 실행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실행하면서 진단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세 단계는 전문직 실무의 본질을 구성한다(35). 진단과 실행은 이론과 실무, 즉 업무와 기반 지식을 연결하는 순환고리의 중심에 있다. 현장에서 발생한 새로운 문제의 진단은 기반 지식 체계를 역동적 방식으로 재구성할

10) 기록과 간행물은 대체로 문자를 사용하여, 종이 등의 서사매체에 담겨 있다는 공통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한편 근본적인 차이점은 기록이 행위의 과정과 결과에서 생산되어 증거와 유일본으로서 속성을 갖는 데 비해, 간행물은 대중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되어 정보로서의 속성을 갖는다는 데 있다. 하지만 어떤 기록은 제한된 배포 범위에서 복본으로 생산되기도 하고, 흔히 회색문헌(grey literature)라고 불리는 간행물들도 제한된 수량이 생산되어 유통되기도 하므로, 그 경계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한편 실무자는 실행을 위한 지침을 기반 지식으로부터 도출한다. 실행 후 효과에 대한 평가는 다시 기반 학문에 새롭게 추가되어 전문가 공동체가 공유하는 지식기반을 확장한다. 추론만은 철저히 현장 실무자가 홀로 해결해야 할 전문적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기록관리 관할영역의 문제를 극도로 단순화하면, 기록을 남기지 않고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 우발적으로나 의도적으로 기록을 파괴하거나 수정할 수 없게 하는 것, 최대한 활용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생산기관에 배치된 기록전문가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록이 생산되지 않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추론해야 하고, 추론을 통해 찾아낸 방법을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다시 기반 학문으로 환류 해야 한다. 문제의 존재를 스스로 인지하고 전문직을 찾아오는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는 전문직, 예컨대 의사나 변호사와는 달리 기록전문직은 관찰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찾고, 찾아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관련자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환기시키는 책무를 갖고 있다.

여기서 앞서 전문직의 정의를 환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전문직은 (1) 특정한 문제를 대상으로, (2) 어느 정도 추상적인 지식을 적용하는 (3) 배타적 직업군으로 정의되었다. 전문지식이 구체적인 지식이 아니라 추상적인 지식이어야 하는 이유는 특정 문제의 진단과 해

법의 실행 사이의 관계가 너무 직접적이라면 전문가의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진단과 실행을 직접 대응하여 정련할 수 있다면, 더 낮은 인건비로 구할 수 있는 인력에 위임하거나 탈전문직화, 즉 전문직의 정당성이 소멸하게 된다(Abbott 46). 추상적인 전문지식으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론의 과정을 맡는 것이 현장 전문가의 역할이며, 바로 이 역할 때문에 전문가의 존재가 정당화된다. 전문직 업무의 시작점인 진단과 종료지점인 해법의 실행이 대체로 명료하고 공식화된 과정이다. 이에 반해 중간 과정인 추론은 전문지식, 문제의 특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확률이라는 모호한 요소들을 연결하는 작업으로, 그 복잡성 때문에 훈련 받은 인간, 즉 전문가의 개입이 꼭 필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48).

전문가 공동체에는 학자 전문가(academic professionals)와 실무 전문가(practitioner)가 함께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학자 전문가는 추상지식을, 실무 전문가는 실무지식을 관장하며, 양자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전문직의 기반지식이 성장한다. 학술지식은 전문직 업무의 기초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주요한 문화적 가치와 연결함으로써 업무를 정당화한다. 대부분의 현대 전문직에서 이는 합리성, 논리와 과학성의 가치를 말한다. 학자전문가는 전문직무의 엄격함, 명료함, 과학적으로 논리적인 특성을 입증하며, 그럼으로써 더 큰 가치의 맥락에서 업무를 정당화한다(54). 실무지식은 현장에서 학술지식으로부터 추출한 해법의 여러 변형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 결과, 즉 성공한 해법과 실패한 해법의 실행 경험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실무자 집단이 축적한 이러한 경험의 집합에서 특정한

현장의 특수성에 관련된 내용을 배제하고 일반화한 지식이 학자전문가에게 환류되어 추상지식을 진전시킨다. 추상지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문직의 지식기반이 성장하기 어렵다. 현장의 특수성에 가려 해체된 상태로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기록 공동체는 아직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지식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다양한 유형의 기록관을 설립하고 충분한 실무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현장을 지키는 실무 전문가들이 학문으로 환류할 만한 실행의 경험을 아직 쌓지 못하였거나, 다른 사람과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외화할 여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단단한 지식기반을 갖추는 일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자격시험을 실행하게 되었다. 자격시험을 도입해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존재한다. 자격시험은 전문지식의 표준화를 전제로 한다. 시험과목에 따라 교과목이 표준화될 것이며, 각 과목 내용이 표준화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계기가 아니더라도 교육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했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자격시험을 위해 기반지식을 정형화하는 것은 전문지식과 실무에서 전문직적 판단, 즉 추론의 중요성을 약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전문적 추론 능력을 표준화된 자격시험으로 검증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직 자격시험은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 지식의 습득과 실무경험에 기반한 기술의 축적, 그리고 전문직의 사회적 실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세 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전문성은 사회적 인정을 전제로 하지만, 그 인정은 능력의 입증보다는 신뢰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식체계에 대해 강박적으로 우려하고, 외부의 인정여부에 대해 끊임 없이 염려하는 방어적 태도'를 경계하고, 사회가 부여한 사회적 과제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 사회복지학자 Austin(1983, 374; 이은주 2003, 214에서 재인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3.3 전문성과 윤리

당장 눈 앞의 실용적 서비스 중심으로만 전문직 활동이 조직된다면 전문직이 표상하는 가치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직에게 중요한 것은 사회가 믿고 맡긴 가치의 실천이다. 윤리규정은 실무자 개인이 직면하는 문제를 다루는 실무 윤리와 현장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 경제적 환경, 즉 사회정책을 설정하는 제도윤리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Freidson이 충고하는 바와 같이, 전문직이 좋은 대우를 받는 기술자 이상의 위상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훈련된 지식과 기술을 공공의 선을 위해 행사할 것을 강조하는 제도윤리를 강력하게 수호해야 할 것이다(311).

윤리규정은 전문직이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인정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자 전문직을 여타의 직업과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이기도 하다. 전문직이 꼭 해야 할 일(전문직 책무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과 하지 말아야 할 일(행동강령 code of conducts)을 성문화하여 전문직 내외부를 대상으로 천명한 것을 말한다. 전문직 전체의 품위 및 대외 이미지를 저해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통제하여 전문직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서로 모순되는 하나 이상의 가치를 적용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에서 전문직 책무를 다하기 위한 판단의 근거로 삼는 사고틀을 담는다.

윤리규정은 윤리강령(Code of Ethics),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전문직 책무규정(Cod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등의 형태를 취한다. 윤리규정은 윤리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된다(김혜선 1994). 윤리강령을 작성하고 유지하는 주체는 전문직 협회이며, 윤리규정 자체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논평 및 해설문을 마련하여 이해를 돕기도 한다. 원칙을 성문화하여 내외부에 천명하는 것 뿐 아니라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는 기제를 마련하여 유지하는 것도 전문직 협회의 역할이다. 그래서 협회 내에 윤리위원회 등 윤리규정의 위배 여부를 심사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상이한 해석이 존재하거나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위배사례를 징계하여 전문직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신뢰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아직 우리 기록관리 전문직의 윤리규정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지난 해 창립한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윤리규정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다. 제 1회 기록인대회에서 발표된 '기록인선언'(2009)<sup>11)</sup>과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창립선언문<sup>12)</sup>이 기록전문직의 책임에 대해 기록 공동체가 동의하여 공동체 외부에 천명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록전문가협회가 주도하고 기록공

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작성하고 천명하여 만들어질 기록전문가 윤리규정은 신입 전문가에게는 지켜야 할 행위규범을 제시하고, 기존 전문가에게는 전문직 책무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며, 사회 전반의 공적인 신뢰를 고취시킬 것이다(신은영 2006, 123).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윤리규정 뿐 아니라 협회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 내부규제가 기록전문직의 자율성을 강화할 것이며, 그렇게 실천하는 자율성이 기록전문성의 중심축이자 시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 4.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전문직 연구 문헌을 검토함으로써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나 배타적 특권의 정당성에 대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전문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전문직 제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지원해야 할 정부가 전문직 공격의 주역이 되는 일도 드물지 않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지난해의 이른 바 '기록관리 현안'을 기록전문직만이 겪는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오히려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겪었어야 할 과정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런 공격이 있든 없든 우리는 우리의 전문성에 관한 많은 질문에 답할 준비를 언제나 갖추고 있어야 함을 돌발적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만을 앞세우는 신자유주의 이데올

11) <부록 1> 참조.

12) <부록 2> 참조.

로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지나친 경쟁의 필요성이나 과도한 특권의 정당성에 대한 엄밀한 문제제기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전문직이 그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성찰보다 특권을 지키기 위한 전문직화에 집중하는 위험을 경계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이은주 2003, 214). 전문직화는 시장경제라는 맥락 속에서 전문직의 비전을 좁히고,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보다는 기존의 부조리한 사회질서가 더 공고해지도록 압력을 행사하게 되리라는 경고이다. 결과적으로 전문직화가 전문직을 사회에 존재하게 하는 근본 이념의 달성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전문직인가, 우리의 서비스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일 것이다.

지난 해의 '기록관리 현안'은 어설픈 전문직 화보다는 독점적 지위를 갖는 전문직으로서의

기록전문직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결과에 기반한 효과적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위기는 우리 기록공동체가 언젠가는 치러야 할 일을 더 늦지 않게 치러 내도록 자극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외부 자극이 있을 때라야만 간헐적으로 기록전문직이 지금 이 땅에 왜 필요한가를 성찰해도 되는 일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기록전문직이 전문직임을 자임하는 한, 그리고 기록전문직이 사회에 존재하는 한은 진지하게 계속되어야 할 논제일 것이다. 지난 해의 현안을 계기로 하여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출범하였다. 이를 전환점으로 하여 파편화된 기록공동체를 재건하고, 기록전문직이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를 윤리강령으로 성문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록전문직의 실천의지를 공동체 내외부에 천명하고, 실천의무 방기에 대비한 자정기능을 갖추어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위기를 맞은 우리가 진정한 전문직으로서 수행해야 할 책무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인호, 백형배. 2007. 미국의 전문직업주의가 자치단체 공무원 퇴출에 주는 정책시사점.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4(2): 271-290.
- 구혜란. 2003. 전문직 자율성의 사회경제적 토대: 이론적 접근. 『한국사회학』, 37(2): 231-248.
- 김기영. 2008.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 논의를 위한 이론적 접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313-333.
- 김세익. 1982. 『도서·인쇄·도서관사』, 서울: 종로서적.
- 김용근. 2002. 한국 사서직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4): 283-306.
- 김현자. 2008. 유아교사 전문성 관련 논의의 접근

- 방법과 내용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3(5): 197-221.
- 김혜선. 1994. 『사서직 윤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 2007. 국외 기록관리 전문직 유형 및 역할 분석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1): 129-143.
- 박은영, 조삼섭. 2007. PR 전문성에 대한 교육자, 실무자, 전공학생의 인식 연구. 『한국언론학보』, 51(5): 443-491.
- 박은정. 2009. 기록관리자 직능단체 설립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정숙. 2010. 전문직으로서의 기록관리직: 전문직은 어떻게 형성되며, 기록관리직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무엇인가? 『기록관리론』, 273-299. 서울: 아세아문화사.
- 신은영. 2006.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아키비스트 윤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2): 113-132.
- 오향녕. 2003.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윤리. 『기록학연구』, 7: 109-128.
- 이경원, 김정화. 2010. 한국 법조의 자율성과 공공성. 『경제와 사회』, 86: 125-161.
- 이경원, 김정화. 2002. 한국 법조인의 행태적 특성 분석. 『한국 사회와 행정 연구』, 13(1): 183-205.
- 이선우, 김기영. 2009. 전문직관점에서 본 전국 사서협회의 성립과 소강. 『정보관리학회지』, 26(1): 259-278.
- 이숙경. 2010. 간호사의 전문직업성 가치; 병원 소비자를 대상으로. 『질적연구』, 11(2): 119-133.
- 이은주. 2003.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과 정체성 확립에 대한 고찰: 간접적 개입과 관련하여. 『상황과 복지』, 16: 203-245.
- 이정훈, 김균. 2006. 한국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 샐러리맨화의 역사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6): 59-88.
- 이제환. 2003. 전문직 이론을 통해 본 사서직의 전문성.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57-87.
- 이홍직. 2007.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인식 연구. 『사회과학연구』, 23(3): 151-172.
- 전병재, 안계춘, 박종연 공저. 1995. 『한국사회의 전문직업성 연구』. 서울: 사회비평사.
- 정연경. 2010. 기록관리학의 발전: 기록관리학의 시작, 학문적 특성, 그리고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기록관리론』, 68-95. 서울: 아세아문화사.
- 정태철. 2005. 언론 전문직업인주의(professionalism)의 필요성: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언론의 문제와 개혁에 대한 논의. 『언론과학연구』, 5(2): 417-454.
- 하승수. 2011. 위험한 전문가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블로그. [cited 2011. 6. 8]. <<http://www.opengirok.or.kr/2325>>.
- Abbott, A. 1988. *The System of professions: An Essay on the division of expert labor*.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arley, S. R., & P. S. Tolbert. 1991. Introduction: At the intersection of organizations and occupations. In P. S. Tolbert

- & S. R. Barley (Eds.),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organizations*, v.8(pp.8-13). Greenwich, CT: JAI Press.
- Freidson, E. 박호진 옮김. 2007. 『프로페셔널리즘: 전문직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과 전망』. 서울: 아카넷.
-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이상민 역. 1999. 아키비스트 윤리규약. 『기록보존』, 12: 263-276.
-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1987). Harlow, Essex: Longman.
- McDonald, K. M. 권오훈 옮김. 1999. 『전문직의 사회학: 의사, 변호사, 회계사의 전문직프로젝트 연구』. 서울: 일신사.

## 〈부록 1〉 기록인 선언

기록은 우리 사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역사의 지속성을 수호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기록인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았거나 당대의 인류가 생산한 기록에 담긴 정보와 사상을 통해 역사와 사회를 밝히고, 다시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이는 모든 기록인이 비판적 성찰과 윤리적 각성의 토대 위에서 실천할 때에 완수할 수 있는 막중한 책무이다. 또한 이 책무야말로 기록 공동체의 존재 이유이자, 기록인 각자의 전문적 사명이기도 하다. 기록관리 학계와 교육계, 정책 및 실무 현장의 종사자들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지를 하나로 모아 여기 밝히고자 한다.

### 첫째, 기록인은 기록과 역사의 계속성을 수호한다.

당대의 활동을 충실히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직의 역사, 사회의 역사를 끊임 없이 미래 세대에게 전승한다. 특정한 입장이나 가치관에 따른 편파적 기록만이 남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며, 기록의 불편부당성과 기록관리의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역사를 기록으로 온전히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 둘째, 기록인은 기록의 공개 원칙을 수호한다.

기록에 담긴 증거와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접근권을 보장하여 기록을 통해 투명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이 은폐되거나, 무능하거나 태만한 관리로 인하여 비공개 기록이 양산되지 않도록 한다.

### 셋째, 기록인은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한다.

기록관리 공동체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날로 복잡해지는 기록 생산 환경과 규제 환경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시의적절하게 축적하고 공유한다. 개인 차원에서도 각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외부의 압력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내부의 태만함을 자정하는 전문적 문화를 확립한다.

### 넷째, 기록인은 전문가 윤리 규정을 정립하고 이를 준수한다.

윤리규정을 토대로 자정능력을 갖추어 우리의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사회의 유보 없는 신뢰를 획득한다. 또한 윤리규정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불의하거나 합당하지 않은 요구에 대하여 공동체 전체의 역량을 다해 대응한다.

### 다섯째, 기록인은 협력과 연대를 실천한다.

내부적으로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막론하고 현장과 학계, 정책기구를 아우르는 굳건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기록인은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기록유산을 더 체계적으로 보존함과 동시에 당대와 미래 사회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더 나아가 기록인은 기록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기록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2009년 11월 27일

제1회 기록인 대회 참가자 일동

## 〈부록 2〉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선언문

### 기록의 과학적 관리와 보존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에서 체계적 기록관리와 기록보존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이래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앙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에서는 기록관리 부서의 설치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이 본격화되었고, 기록학 분야의 학술연구와 기록관리자 양성과정 역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민간의 학교나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도 최선의 기록관리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축제나 공연, 집회는 물론 일상생활 자체의 기록화 활동 역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원동력은 바로 정보이자 증거이며 기억이자 역사유산인 기록의 과학적 관리와 보존의 실현이 우리 시대의 승엄한 과제라고 하는 자각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발전시켜온 공통된 사명이기도 합니다.

### 우리는 신망받는 기록관리의 실천자입니다.

기록은 이를 직접 생산하였거나 깊이 관련된 존재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유통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존재들에게도 기록은 사용되며, 심지어 수십 년 지난 뒤의 후속 세대나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이용합니다. 이처럼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는 기록을 생산한 개인이나 업무조직의 이익에 봉사할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갖가지 목적으로 기록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여합니다.

비록 물질적인 이익의 창출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록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은 조직의 업무활동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되도록 지원하고, 안팎의 위험요소로부터 개인과 조직을 보호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또한 구성원들의 일체감과 역사의식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핵심적으로 기여합니다. 나아가 원활한 의사소통과 책임의식에 기초한 지식정보의 축적과 공유,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와 사회통합 등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합니다.

이와 같은 역할의 이면에는 기록관리자의 뚜렷한 “사명의식”과 엄정한 “직업윤리”,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 등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두터운 신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대중적인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 쇄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만이 비로소 타인을 돕는 우리의 전문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스스로의 성장을 촉진하며 명예와 자긍심을 함양해 갈 수 있습니다.

### 이제 우리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를 창립합니다.

기록과학의 개척과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자임하는 우리는 가장 헌신적인 자세로 최선의 직무활동을 실천함으로써 대중의 신망에 부응하는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정과 연대”의 정신을 깃발 삼아 감히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창립을 세상에 고합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기록관리와 기록보존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와 활동가를 비롯해, 기록문화의 진흥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의제와 활동을 함께 토론하고 연구·개발하며 발전시켜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원의 자발적 주권 행사에 기반을 둔 민주적 운영을 철저히 견지하는 일에 모든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모든 기록관리자의 전문화와 지속적인 전문성 쇄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다양한 관심과 주제에 따른 분과활동 프로그램, 정책과 이론 및 실무의 연구개발을 위한 집중 프로젝트, 정보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기록관리자 네트워크, 그리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도록 촉진하는 권익옹호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제공할 것입니다.

**기록과학의 성과를 역사에 새길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의 활동이 주로 제도와 이론, 조직과 사람에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왔듯이, 이제는 정책과 기술, 윤리와 문화에 보다 깊은 성찰과 노력을 경주하여 역사적인 성과와 결실을 맺도록 분투할 것입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창립을 선언하는 이 순간부터 협회의 모든 회원은 전문성 쇄신의 열망과 자긍심으로 합심하여 찬란한 기록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나갈 것입니다.

창립 회원 224명의 의지를 모아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창립을 준엄하게 선언합니다.

2010년 11월 6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원 일동